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성길용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포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을 격려하고,
-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하고 적법한 포상업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포상대상에 외국인을 명시(안 제2조)
-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 신설(안 제4조 및 제7조의2)
-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- 연초 포상계획에 따른 정기포상의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- 포상 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(안 제1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4월 17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4
 - 전자메일 : dbsgudfh@korea.kr

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오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나 기관·단체 및 공무원”을 “내국인과 외국인, 공무원 및 기관·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감사장”을 “감사장, 모범공무원 포상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후원명칭의 사용승인) 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.

1.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
2.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,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

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
2.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

제7조의2(모범공무원 포상)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 중 “정기적”을 “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이중포상의 금지)”를 “(포상의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”를 “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<u>오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나 기관·단체 및 공무원</u>에 대하여 행한다. <u>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·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상장, <u>감사장</u>으로 구분 시행 하되, 필요에 따라 패 등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포상대상) ----- ----- <u>내국인과 외국인, 공무원 및 기관·단체</u>-----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제4조(포상의 종류) ----- ----- <u>감사장,</u> <u>모범공무원 포상</u>----- ----- .</p> <p><u>제6조의2(후원명칭의 사용승인)</u></p> <p><u>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</u></p> <p>2. <u>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,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

<신 설>

제12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중포상의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1.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

2.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

제7조의2(모범공무원 포상)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포상시기) -----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-----

제13조(포상의 제한) -----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.